

연금저축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

1 연금저축계좌 제도개요

구분	내용
상품특징	-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, 연간 최대 6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3.2% ¹⁾ 또는 16.5% ²⁾ (지방소득세 포함)까지 세액공제 - 한편,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(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)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연금수령	가입 후 5년 경과 및 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,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* 단,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의 경우, 5년 경과요건 미적용
연금수령한도	연금계좌의 평가액 / (11 - 연금수령연차) x 120%
연금외수령	연금수령 요건 이외의 자금 인출(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)하는 경우는 연금외수령
가입대상	제한없음 (단, 비거주 외국인 불가)
납입한도	일반 납입액 1,800만원 + 만기 ISA 계좌 내 금액 + 주택차액 + 부동산차액 (주택·부동산 합산 1억원) (전 금융기관 합산, 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)
세액공제	당해년도 납입액의 13.2% ¹⁾ 또는 16.5% ²⁾ (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600만원)
보수 및 수수료	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각 펀드별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 (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계좌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)
계좌이체	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단, 주택차액 및 부동산차액 전용 연금계좌는 국세청의 사후관리 종료일까지 이체가 제한
계좌승계	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

1) 종합소득 4,5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,500만원) 초과인 경우

2) 종합소득 4,5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,500만원) 이하인 경우

2 금융권역별 상품특징

구분	증권	은행	생명보험	손해보험
상 품	연금저축펀드계좌	연금저축신탁	연금저축보험	연금저축보험
납입방식	자유납	자유납	정기납	정기납
연금형태	확정	확정	종신, 확정	확정(~25년)
예금자보호법	적용되지 않음	적용	적용	적용

3 연금저축계좌 세제

구분	납입시	연금외수령시	연금수령시
세제종류	세액공제 혜택	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	연금소득세* *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포함

- 매년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(이자분)과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은 연금 외 수령시 기타소득세(16.5%, 지방소득세 포함)를 부과합니다. (소득세액공제확인서, 연금납입확인서 제출 필요)
- 연간 사적 연금소득금액(퇴직금 등 제외)이 1,5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(16.5%, 지방소득세 포함) 중 선택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.
- 계좌 내에 퇴직금 등 이연퇴직소득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며, 연금수령시에는 퇴직소득세의 60~70%를 연금소득세로 과세합니다.
-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※ 당사 인터넷홈페이지(www.shinhansec.com), 금융투자협회(www.kofia.or.kr), 금융감독원(www.fss.or.kr) 웹사이트를 통해 수익률, 수수료, 유지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※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.